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(T/K)]

- 점검일시 : 2018.04.10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함창록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확보를 위해 933정거장 공조덕트 방수작업장으로 통하는 진입 가설통로(계단) 설치 요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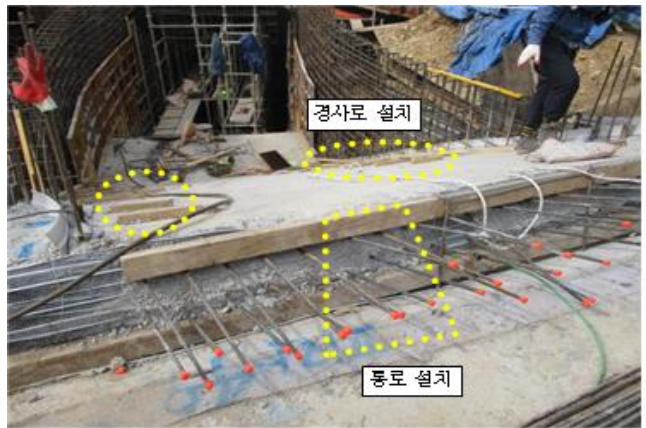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3(가설경사로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2(작업발판 및 계단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3정거장 4번출입구 거푸집작업 중으로 출입구 바닥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니 등간격으로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거나 가설경사로를 설치하기 바람,  
- 출입구 측벽 거푸집 작업은 통로 설치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
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(가설경사로)

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3정거장에서 사용되는 석재는 훼손된 팔레트에 놓여있어 자재 이동시 낙하에 의한 상해가 우려되니 자재 보관시 적재하는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팔레트를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(팔레트 등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토목부)

- 933정거장 7번출입구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콘크리트 펌프카와 콘크리트 믹서트럭 사이에 설치한 Stoper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기 바람,  
 - 933정거장 8번 출입구에서 하역작업중인 크레인의 받침대는 2단 이하의 균질한 재질의 깔판을 사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토목부)

- 933정거장 도로복구 작업(용단작업)에 사용중인 가스는 작업이 끝나면 잔여가스 제거 후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기 바람.
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2정거장 4번 출입구에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(미장용 몰탈)은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하고 물질의 유해성에 대하여 근로자 교육 요망.

-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·비치 등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토목부)

- 933정거장 7번 출입구에 설치된 분전반은 안전한 출입통로가 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분전반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보 확보 또는 이전을 검토하고 조치 요망.
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

